

- 구미도시계획재정비 결정(변경)안불합리에 따른
청원(거의2동) -

검 토 보 고 서

1. 청 원 자 : 구미시 거의동 386번지 김정무 외 16인

2. 소개의원 : 구미시의회 의원 박 배 원

3. 청원사유(내용)

- 도·농통합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구미도시계획 재정비 결정(변경)안에 의하면 거의동 금오공대 이전부지 정문의 앞쪽에 도시계획시설의 공공공지로 지정되어 있어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많은 피해 우려.
- 주민들의 많은 땅이 4공단조성 및 진입도로, 금오공대 이전부지 등 국책사업의 부지로 편입되고 남은 땅마저 공공공지로 지정되면 생존권 박탈 위기감 팽배.
- 금오공대 정문부터는 상당한 면적의 주차장과 공원이 확보되어 있어 추가로 중복되는 시설인 공공공지를 지정할 필요가 없으므로 주거지역으로의 지정을 요망.

4. 검토의견

-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제64조와 제65조 규정의 공공공지의 설치 목적과 결정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감안하고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도시계획재정비(안)이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.